

계약조건심의 검토의견서

□ 건명 : 서울월드컵경기장 영상송출설비 구매설치

◉ 검토의견 : 원안의결 () / 수정의결 ()

◉ 입찰참가자격 조건 변경(안) - (수정의결시)

기존)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(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, 업종코드 : 1468)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,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위치한 업체

변경)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

◉ 변경사유(수정의결시) :

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만으로 가능_입찰참가자격 과다 제한

2018. 05.

심의위원

정 창 수

不^인정

계약조건심의 검토의견서

□ 건명 : 서울월드컵경기장 영상송출설비 구매설치

◎ 검토의견 : 원안의결 (○) / 수정의결 ()

◎ 참고사항

1. 일반지침서 15. 기타사항 문구수정

- “나. 계약상대방은 과업 수행 전 과정에서 면허, 특허권, 의장권, 공업소유권, 지적소유권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·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계약기관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”를
- “나. 계약상대방은 과업 수행 전 과정에서 인·허가 관련 법령 및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계약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·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계약기관에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.”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.

2. 특기지침서. 2. 구매조건 문구수정

- “(6)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정품 및 최신 제품이어야 하며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.”를
- “(6)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정품 및 최신 제품이어야 하며, 소유자의 특허권등을 침해하지 않는 등 지식재산권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”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.

3. 특기지침서. 3. 철거 및 설치 문구수정

- “(8) 계약상대방은 본 과업을 수행할 때 계약기관의 업무(행사 등)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업 시간 등 제반사항을 계약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소모품 등을 적시에 준비하여 이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”에서, “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”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(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다32668 판결 등)고 할 것이라는 점, 작업시간 등은 공단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,
- 이에 과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부담도록 하기 위해서는 “(8) 계약상대방은 본 과업을 수행할 때 계약기관의 업무(행사 등)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소모품 등을 적시에 준비하여 이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”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.

2018. 5. 4.

심의위원 장호진 *장호진*